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입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안건형* · 조인호** · 권희환***

-
- I. 서론
 - II. 기업책임경영의 의의 및 현황
 - III. 기업책임경영의 국제적 입법 동향
 - IV. 기업책임경영 관련 국제입법동향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 V. 결론
-

주제어 : 기업책임경영,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글로벌 공급사슬, 인권실사

I. 서론

선진국을 모국으로 하는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에 위치한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투자·진출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우리 기업들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의 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인 수출 및 해외 투자·진출 전략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

*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제1저자), E-Mail : copy7318@nate.com

**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과장(교신저자), E-Mail : joynor@naver.com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팀장(공동저자), E-Mail : kwonheehwan@gmail.com

기업들은 1980년대 말 약 300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여 미화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수준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약 65,782개 법인(건수: 155,595건)이 해외에 진출하여 미화 약 3,487억 달러를 투자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한바 있다.¹⁾ 그런데 세계의 많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유치국 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훼손 등 부정적 영향이 야기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다국적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바 있다.

그 중에서도 OECD는 1976년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²⁾³⁾을 제정한바 있고, 동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2017. 5. 31. 현재 47개국⁴⁾에 국내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내용 전반에 걸쳐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개념이 바로 기업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RBC’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RBC의 해외 입법의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의 의의 및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의 국제적인 입법 동향 및 활용 현황에 대해 고찰하며, IV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입법동향 및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입법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V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입법 방향 및 우리 기업들의 실무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RBC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RBC는 OECD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BC에 대하여 직접 다룬

1) 더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참고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7.3.5. 15:35 최종접속).

2)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제정되어 총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2011년 개정 가이드라인이 최신 버전이며, 11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1. 개념 및 원칙, 2. 일반 정책, 3. 정보의 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 소비자보호, 9. 과학 및 기술, 10. 경쟁, 11. 조세).

3)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1) 다국적기업과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 간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며, 2)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기여를 촉진하는데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11. p. 13.

4)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회원국 35개국(2016. 6. 라트비아 가입)과 OECD 비회원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12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집트, 리투아니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 튀니지, 요르단, 우크라이나)을 포함하여 47개국이다.

국내의 논문은 찾을 수 없었고, RBC 개념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⁵⁾에 대해 자세히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이상수(2014)⁶⁾의 연구 한 편밖에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RBC의 개념, RBC 관련 최신 해외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국내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기업 및 실무자들에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소개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해당 국내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추세를 알려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관련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

II. 기업책임경영의 의의 및 현황

본 장에서는 우선 RBC의 의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 한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Value Share; 이하 ‘CSV’라 한다) 등에 대한 개념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RBC의 개념이 통합되어 있는 OECD 가이드라인과 산업분야별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사무 관련 지침(Due diligence Guidance)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RBC의 유사개념들이 녹아있는 UN 기업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라 한다), UN Global Compact (이하 ‘UNGC’라 한다), ISO 26000, Global Report Initiative(이하 ‘GRI’라 한다)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RBC의 의의

1) RBC의 개념

RBC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고,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상황인 만큼 확립된 정의를 내리기는

-
- 5) OECD 가이드라인은 RBC라고 할 수 있지만, RBC는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OECD 가이드라인은 RBC 구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둘 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상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법학 제 55권 제3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9, pp. 221~255.

어렵지만, OECD RBC 실무작업반(OECD 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의장(Chair)인 Roel Nieuwenkamp는 RBC에 관하여 “RBC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환경,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이를 다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CSR의 개념이 종종 기업 (본래의) 활동과 무관한 자선활동과 연결되는 반면, RBC는 기업 (본래의) 활동 범위 내와 사업관계, 공급사슬에서의 책임 있는 관행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하여 CSR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⁷⁾

또한, “OECD-FAO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RBC란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2)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해결하며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영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정적 영향을 금지하거나 경감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⁸⁾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RBC - 미국을 위한 첫 번째 국가이행계획”에서는 RBC를 “기업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RBC 이행을 위한 조건들을 수립하고 촉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⁹⁾ 나아가 이 개념은 “기업과 사회 간 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 특히 비중을 두는데, 1)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강조하며, 2) 기업 활동에 따른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회피하며, 또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면 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CSR

CSR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번역되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정의는 조금씩 변화해왔다. 이 개념은 1953년 Howard Bowe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초기 단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랫동안 CSR보다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이라는 용어로 종종 지칭되었다.¹¹⁾ 당시 Bowen은 그의 저서

7) Roel Nieuwenkamp, “CSR is dead! What’s next?”; available at <<https://friendsoftheoecdguidelines.wordpress.com/2016/01/22/2016-csr-is-dead-whats-next>> (2017. 5. 29. 20:30 최종접속).

8) OECD &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OECD Publishing, Paris, 2016, p. 40.

9) US Secretary of State (December 16, 2016),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Firs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 4; available at <<https://www.state.gov/e/eb/eppd/csr/naprb/index.htm>> (2017.5.12. 16:50 최종접속).

10) *Ibid.*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에서 SR(CSR)에 대해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추구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행동 방향을 따르는 사업가의 의무”라고 정의하였다.¹²⁾ 1960년대 Keith Davis는 “적어도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익을 부분적으로 뛰어 넘는 이유로 인하여 취해진 사업가의 결정과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¹³⁾ 1973년에는 “협회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법적 요구를 뛰어 넘는 이슈에 대한 회사의 고려와 반응”이라고 언급하였다.¹⁴⁾ A. B.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조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임의적 기대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CSR 피라미드 개념을 주장하였다.¹⁵⁾

<그림 1> Carrol의 CSR 피라미드



* 자료 : Michael Hopkis, *CSR and Sustainability: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Greenleaf Publishing, Sheffield, 2016, p. 10.

- 11) Andrew Crane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8, p. 25.
- 12) Mark Esposito, *Put You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 Together!*, Tate Publishing & Enterprises, Mustang, 2009, p. 110.
- 13) Andrew Crane et al, *op cit.*, p. 27.
- 14) *Ibid.*, p. 30.
- 15) Michael Hopkis, *CSR and Sustainability: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Greenleaf Publishing, Sheffield, 2016, p. 10.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CSR은 자선활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CSR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현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더욱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

(2) CSV

CSV는 ‘Creating Shared Value’의 줄임말로 ‘공유가치창출’이라고 번역된다. 이 개념은 2011년 하버드대학교의 Michael Porter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기업이 책임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차 자선사업·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는 기존의 CSR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CSV의 개념은 시작한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CSR이 기업의 주요사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CSV는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⁶⁾ 즉, ①제품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②가치사슬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③지역사회의 사업기반 개선 및 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 방법¹⁷⁾을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CSV의 유명한 사례로는 Nestle가 아프리카 내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카카오 생산과 관련하여 단순히 공정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 품종의 개발 및 향상된 재배·가공 기술을 현지 농부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 현지 농부들의 수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Nestle도 양질의 카카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본의 수질정화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Nippon Poly-Glu라는 회사는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가에서 자사의 수질정화제를 현장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판매하는 현지인을 단순노동자가 아닌 관리원(Polyglu Lady, Polyglu Boy)으로 육성하여 현지의 수질사정을 개선하는 비즈니스로 정착시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식수보급까지 동시에 달성한 사례¹⁸⁾도 있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CSV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CSR의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가치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배구조나 노동, 인권 등의

16) 신창균, “CSR과 CSV”, 기업지배구조(CG) 리뷰 제66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1, p. 59.

17)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1, pp. 209~210.

18) KOTRA,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 -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Global Market Report, 2013-46, 2013, pp. 9~13.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과 CSV가 기업 중심 사고에 매몰되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¹⁹⁾는 점에서 CSV의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2. OECD 가이드라인

RBC의 개념과 내용은 OECD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²⁰⁾되고 있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와 다국적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 즉 투자유치국(host state)과 다국적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및 다국적기업의 약탈적 행태·투자유치국의 정치 개입 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가운데 OECD는 1976년에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그 부속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이후 OECD 가이드라인은 다섯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2011년에 개정된 버전이 적용되고 있다.

1) 내용 및 특징

OECD 가이드라인은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이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은 RBC에 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OECD 가이드라인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CSR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윤리를 다루고 있는 여타 다른 국제 문서와는 다르게 고유의 특징이 있다.²²⁾

19) 신창균, 전제논문, p. 61.

2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부제목은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권고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a global context)’인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1) OECD 가이드라인 각 장의 순서와 제목은 아래와 같다:

1. 개념 및 원칙, 2. 일반 정책, 3. 정보의 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 소비자 보호, 9. 과학 및 기술, 10. 경쟁, 11. 조세.

22)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matters”, pp. 2~3; available at <http://mneguidelines.oecd.org/MNEguidelines_RBCmatters.pdf> (2017.5.29. 22:10 최종방문).

- ①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여(government-backed)하는 가장 종합적인 국제 문서;**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와 같이 여타 다른 국제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② **고유한 이행 메커니즘 보유;** OECD 가이드라인의 수락국은 국가별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NCP를 통하여 이행 상황을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으며,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조정 등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국제 문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 ③ **자발적이지만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OECD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국내법 또는 국제적 규범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OECD 가이드라인의 수락국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 수락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다국적기업에게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고 있는 권고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에 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기업 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④ **실사의무와 책임 있는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다루고 있음;** OECD 가이드라인은 UN 기업인권 이행지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권 존중에 관한 기업의 책임이 반영된 첫 번째 국제 문서이다. 또한 국제 문서 중 처음으로 기업 윤리의 주요 분야에서 리스크에 기초한 실사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 ⑤ **모두를 위한 모범 관행;**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동 가이드라인은 세계보편적인 가치들과의 일치성을 추구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개방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같은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⑥ **정기적인 업데이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세계적인 RBC를 선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1년 개정 버전은 UNGP의 내용을 상당 부분 도입하여 인권 분야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제를 위한 접근(access to remedy)의 현실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

OECD는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준수를 촉진을 목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연구·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RBC를 한 층 더 구체화시켜서 기업들이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에 대해 실제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²³⁾

책임 있는 농업공급사슬에 관한 OECD 지침(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OECD 실사의무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 in the Extractive Sector), 섬유와 신발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을 위한 OECD 실사의무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지침은 제정 단계부터 RBC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n RBC),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 기타 유사 국제규범

1) UN 기업인권 이행지침 (UNGP)

2008년 6월에 하버드대학교 John Ruggie 교수팀은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승인을 득한바 있다. 이후 UN인권위원회는 John Ruggie 교수팀에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1년 6월에 “UN 기업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UNGP는 1.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The 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2.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3. 구제에 대한 접근(Access to remedy)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인권 분야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통

23) 상세한 내용은 OECD RBC 웹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mneguidelines.oecd.org/sectors/>> (2017.5.29. 23:00 최종접속).

24)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017.5.29. 23:20 최종접속).

하여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자 중요한 문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2011년 OECD 가이드라인도 직접적으로 차용·반영하였다.

2)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²⁵⁾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이자 인권원칙 등을 준수하기로 하는 약속으로,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 천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⁶⁾ 세계 경영 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라 한다)²⁷⁾와 같은 UN 아젠다의 이행 촉진을 그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홍보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는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

25)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6) UNGC Network Korea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576> (2017.5.25. 20:30 최종접속).

27) UN Global Compact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ie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상세한 내용은 <https://www.unglobalcompact.org/sdgs/17-global-goals> (2017. 5. 26. 11:55 최종접속) 참조.

원칙과 인식, 핵심주제와 쟁점,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이다.²⁸⁾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CSR에서 기업을 뜻하는 ‘C’를 뺀 ‘SR’, 즉, 사회적 책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²⁹⁾는 특징이 있다.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법률 준수,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을 기본 7개 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사회발전이라는 7가지의 실천 영역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4) GRI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1997년 미국에서 Ceres³⁰⁾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네트워크 기반의 비정부기구로 지속가능성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권장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GRI 가이드라인은 2000년 6월에 G1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현재 G4가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 환경, 노동관행, 인권, 제품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이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RBC의 유사개념들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여러 국제 규범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OECD 가이드라인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는 RBC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CSR과 CSV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28) 한국인권재단 아카이브; available at <<http://forhumanrights.tistory.com/274>> (2017.5.25. 23:30 최종접속) 참조.
 29) 황상규, “ISO 26000(사회책임)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기업지배구조(CG) 리뷰 제50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5, p. 16.
 30) Ceres는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과 기업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리더십을 구축하고 해결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비영리조직이다. Ceres는 강력한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물 부족, 환경오염, 인권남용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 반대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Ceres 웹페이지, available at <<https://www.ceres.org/about-us>> (2017.5.29. 23:40 최종접속) 참조.

<표 1> RBC-CSR-CSV 비교표

| | RBC | CSR | CSV |
|-------------|----------------------------------|----------------|---------------------|
| 정의 | 기업책임경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공유가치창출 |
| 핵심개념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 부정적 영향의 회피 및 완화 | 선량한 기업시민, 사회공헌 |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가치 창출 |
|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 | 밀접한 관련성 있음 | 약하거나 없음 | 밀접한 관련성 있음 |
| 의무 | 일부 있음 | 없음 | 없음 |

RBC는 CSR과 유사해 보이지만, 자선활동과 같이 기업 본래의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국내법 준수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경쟁, 조세, 소비자 보호 등 기업 본래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SV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없는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뇌물방지과 같은 영역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RBC가 유사개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은 RBC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여러 나라의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거나³¹⁾ 반영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RBC-CSR-CSV 개념적 구별

| RBC | CSR | RBC | CSV |
|--|------------|---|--------|
| 기업책임경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책임경영 | 공유가치창출 |
| RBC는 CSR과 유사해 보이지만, 국내법 준수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경쟁, 조세, 소비자 보호 등 기업 본래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 RBC는 CSV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없는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뇌물방지와 같은 영역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

다음 장에서는 RBC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예컨대, 인권, 환경, 뇌물방지, 조세 등의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이행의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Ⅲ. 기업책임경영의 국제적 입법 동향

1. 개관

OECD 가이드라인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개념인 RBC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5차 개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OECD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CSR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RBC가 법률적·규범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반해, 일찍이 1960년대부터 등장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왔던 CSR은 윤리적·자선적(philanthropic)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일별된다.

나아가, 위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이다. RBC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동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국가별로 설치된 NCP³²⁾에 이의제기사건을 신청·접수 할 수 있다. 반면, CSR은 기업 자율에 의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정부가 관여하는 구제수단이 없다.

2. 국제적인 입법 동향

OECD는 위에서 살펴본 가이드라인 외에도 동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하여, 각 산업 분야별, 예를 들어, 채굴산업(extractive industry), 광물(mineral), 농업, 의류·신발, 금융, 스포츠 산업 등의 특성 및 위험요인을 반영한 부문별 세부 지침(Guidance)을 제정 또는 마련 중이다.

그런데 가이드라인과 부문별 세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RBC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추세는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

32)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인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미국은 일명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서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대하여 인권의 내용을 포함한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³³⁾

또한 1930년도에 제정된 미국 「관세법」 제307조는 강요된 노동 또는 아동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다만, 미국 내 국내 생산으로 특정 제품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나, 2016년 2월에는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³⁴⁾

미국의 주법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공급사슬상의 투명성에 관한 법」에서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공급사슬상의 노예 또는 인신매매의 위험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이를 기업의 대표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⁵⁾

2) 프랑스

프랑스도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의무 강제화 제안이 핵심인 「모기업 및 지시 권한 있는 기업에 대한 경계 의무에 대한 1897년 법률 제안(2014. 4. 29)」³⁶⁾이 2015년 3월 상원에서 가결되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동년 11월 하원은 동 제안을 부결한 바 있다.³⁷⁾ 이후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회는 2016. 11. 29.

33) 특정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어느 지역에서 공급 받았는지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http://www.cftc.gov/idc/groups/public/@swaps/documents/file/hr4173_enrolledbill.pdf> (2017.3.5. 20:30 최종접속) 참조.

34) 박상희, “의류와 신발 부문의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회의(2017. 2. 8~9) 결과 논의된 주요 내용”, OECD 한국대표부, 2017. 2. 17, p. 6.

35) *Ibid* 총매출 1억 달러 이상의 제조업체 및 소매상이 그 대상이다.

36) 「Proposition de Loi 189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29 April 2014)」

37) 국내 종업원 5,000명 이상, 국제적으로 10,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의무 위반 시 벌금 1,000만 유로가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OECD, *Annual Report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5*, OECD Publishing, Paris, 2016, p. 18.

이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다시 프랑스 상원에 제출되어 2017년 초에 최종 채택되었다.³⁸⁾³⁹⁾ 향후 최소한 60명의 국회의원들(legislators)이 요청이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동 법안을 발효시켜야 한다.⁴⁰⁾

3) 스위스

스위스 역시 인권과 환경 실사의무 강제화 입법 제안을 한바 있으나 스위스 의회에서 95대 86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기업정의를 위한 스위스 연정”은 국민발의 운동을 개시하였고,⁴¹⁾ 2016. 10. 10. 현재 약 12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스위스 정부에 다시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2018년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한다.⁴²⁾

4) 영국

영국도 「2015년 현대 노예방지법」(2015 Modern Slavery Act)에서 기업 활동 또는 공급사슬에서의 노예나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연례 보고서의 발간을 요구하고 있다.⁴³⁾

동 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3,6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국법인에 한정하지 않는다.⁴⁴⁾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동 성명을 게시하여야 하고, 동법의 적용은 2016년 3월말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연도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⁴⁵⁾

38) 프랑스 의회 웹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ta/ta0843.asp>> and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dossiers/devoir_vigilance_entreprises_donneuses_ordre.asp>

(2017.5.19. 12:15 최종접속) 참조.

39)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 즉, 상원(Senate)과 하원(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발의 법률안은 상·하원 중 어느 곳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 법률안이나 사회보장제정 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만약 두 의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원의회의 의견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40) OECD, *Draft Annual Report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6 (DAF/INV/RBC(2017)2)*, 2017, p. 18.

41) OECD, *Annual Report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5*, OECD Publishing, Paris, 2016, p. 19.

42) OECD, *supra note 40*, p. 18.

43) 박상희, 전계자료, p. 6; 영국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the State)가 동 법률에 근거하여 출판한 “공급사슬의 투명성에 관한 지침”에서도 기업에 대하여 실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사슬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44) 광관훈, 전계논문, p. 219.

45) 상계논문.

5) EU

EU는 “OECD 분쟁 관련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획득한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 실사의무 지침”을 참고하여 분쟁이 연관된 광물에 대한 규범(Regulation) 작성을 착수한바 있고, 2016년 11월에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⁶⁾ 또한 EU 의회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하 ‘ITC라 한다)는 2017. 5.에 동 규범(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 1. 1.부터 모든 EU 국가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⁴⁷⁾

나아가 EU 의회는 방글라데시 Rana Plaza 빌딩 붕괴 참사 발생 2주년에 즈음하여 EU 이사회에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라 한다)과 OECD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3국 생산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EU 기업들에게 법적 실사의무 부과를 위한 새로운 EU 법률 제정⁴⁸⁾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⁴⁹⁾

[표 3] 국가별 RBC 관련 입법동향

| 국가 | 법 이름 | 내용 |
|-----|---|---|
| 미국 | 도드-프랭크법 | 공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사슬에 대하여 인권의 내용을 포함한 실사의무를 부과 |
| 프랑스 | 모기업 및 지시 권한 있는 기업에 대한 경계 의무에 대한 1897년 법률 제안 |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의무 강제화 제안 |
| 스위스 | | 인권과 환경 실사의무 강제화 |
| 영국 | 2015년 현대 노예방지법 | 기업 활동 또는 공급사슬에서의 노예나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연례보고서의 발간을 요구 |
| EU | | OECD 분쟁 관련 고위험지역으로부터 획득한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 실사의무 지침을 참고하여 EU 국가들에게 실사의무를 부과 |

46) OECD, *supra note 40*, p. 18.

47) *Ibid.*

48) EU (201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Rana Plaza building collapse and progress of the Bangladesh Sustainability Compact.

49) OECD, *supra note 41*, p. 19.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로서는 21세기 새로운 무역·투자 관련 국제통상 질서 하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인권과 기업책임경영(RBC) 관련 국내외 규범 준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U의 “특정의 대규모사업 그룹의 비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유럽 의회 이사회 지침(EU Directive 2014/95/EU; 2014. 12. 6. 시행, 이하 EU 이사회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본 지침을 자국에서의 입법화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향후 유럽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 체결 시에도 RBC 관련 조항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국제 투자협정의 3/4 이상에 RBC가 규정되어 있으며, 54개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7개국이 조약(treaties)에 RBC를 포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따라서 다국적기업이나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RBC에 대한 규범화 추세를 인지하고 무역이나 투자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받거나,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도의 기업 이미지 실추 및 불매운동 확산 등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기업책임경영 관련 국제입법동향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1. 개요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개별 입법에서 RBC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EU 이사회 지침이 올해 시행될 예정

50) OECD, *supra note 41*, p. 21.

임에 따라 해당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제일 효율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RBC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국내 경제 활동 속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 및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국제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의 CSR 또는 RBC에 대한 국내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고찰한 후에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 입법 현황

1) CSR 현황⁵¹⁾

우리나라에서 CSR과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99년 제정된 「산업발전법」이라 할 수 있다.⁵²⁾ 당초 이 법은 주로 기계적 효율성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었으나, 2009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라고 입법 목적 역시 개정되었다.⁵³⁾ 「산업발전법」은 제18조와 제19조에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고 있다(제2조). 제정 당시 법 목적에 ‘지속가능 발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⁴⁾ 또한 동 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기업의 3대 책임으로 주로 논의되는 Triple Bottom Line으로 살펴보면,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역시 CSR 입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 조항에는, 3대 축 중 사회성을 제외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⁵⁵⁾

51) 본 논문은 주로 RBC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RBC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기존 CSR 관련 입법의 양태를 일부 살펴보고 RBC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CSR에 대한 입법 현황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52) 박관훈, 전제논문, p. 222.

53) 성승제,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3-03, 한국법제연구원, 2013. p. 160.

54) 상계서, p. 162.

55) 상계서, p. 166.

CSR 경영을 직접 규정한 입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제62조의4 제1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의 종업원, 거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CSR 경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⁵⁶⁾

2) RBC 현황

지난 해 홍일표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 목적에서, 세계 각국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우리 기업들에게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비재무적 정보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이나 이런 부분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RB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라고 판단된다.⁵⁷⁾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RBC 입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 법에 ESG⁵⁸⁾ 고려 및 이에 대한 공시의무는 지난 2015년 법 개정에 반영되었으나, 공시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비재무적 성과의 고려여부, 고려정도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역시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⁵⁹⁾⁶⁰⁾

56) 박관훈, 전계논문, p. 222.

57)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9조 제2항 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6. 내부신고제도와 내부신고자 보호대책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실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8.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10.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의안번호 2001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58) 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적을 의미한다.

59) 의안번호 20022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60) 이 외에도 당초에는 기업의 책임경영을 상정하고 마련된 것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정책적 시사점

1) 인식의 부족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EU 여러 국가들은, 공급사슬, 아동, 인권, 환경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RBC를 받아들이며, 이를 입법화하는데 주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상당수의 논의 및 입법이 전통적인 CSR에 국한되었다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논의가 기업의 시혜적 또는 자선적 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CSR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경영 성과 여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매우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CSR 조차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주장하는 RB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규제에 받아들여 수용에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⁶¹⁾ 그러나, 영국의「2015년 현대 노예방지법」은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전 세계 모든 법인에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 역시 국제거래에 있어 RB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CSR을 넘어서 RBC를 기업 경영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되, 다만 이를 시행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적용 대상의 문제

CSR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회공헌팀 내지 CSR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RBC에 익숙한 글로벌기업의 한국자회사 내지 외국계기업들의 경우 역시 기초적이거나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 CSR 또는 RBC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과정이 없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토록 하

이 확대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는 법률들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 특별 입법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책임경영 내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입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성승재,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법적 쟁점 : 서론적 고찰”,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三宇社, pp. 25-29.

61) 김영권,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 실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6. 6. 30; *available at* <[http:// www.fnnews.com/news/201609301746239381](http://www.fnnews.com/news/201609301746239381)> (2017. 6. 4. 14:20 최종접속).

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⁶²⁾ 즉,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CSR 또는 RBC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유효성 내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한 이후에 가능하면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과정 없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3) 입법 방식의 문제

RBC에 대한 내용을 현행처럼 개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 활동의 기본이 되는 상법 등에 규정을 신설할 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자는 입장은, 갈수록 증대하는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과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일반 규정을 두더라도 회사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만일 일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⁶³⁾ RBC를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봐도, 아직 회사법이나 상법 등에 RBC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유치국 내에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등 부정적 영향이 야기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1970년대부터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가 시작된바 있다.

62) 중소기업청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CSR 인식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고시한바 있다(고시번호 제2016-65호); *available at*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57472>> (2017.6.4. 15: 20 최종접속).

63) 이상훈,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CSR 법제화의 길을 묻다) 자료집, 공동주최(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외), 2010. 4. 29, p. 6.

이 중 OECD에서는 1976년에 OECD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국의 NCP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동 가이드라인의 기저를 이루는 개념이 바로 RBC이다.⁶⁴⁾ OECD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5차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그 핵심이 다국적기업들이 그들 자체의 행위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급사슬(Supply Chain)과 연계된 관련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NCP에 이의제기사건을 접수시킬 수 있다는 것이 5차 개정 이전의 OECD 가이드라인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에 대한 RBC의 의무 확대 및 국제적인 입법화 추세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영국, EU 등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도 RBC 관련 국제논의 동향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입법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게 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활발한 움직임에 반해, 국내에서는 RBC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고, CSR 위주의 입법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BC는 CSR보다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CSR 위주로 입법화되기 보다는 RBC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⁶⁵⁾

이러한 입법화 취지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에 있어서는 비과세장벽이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RBC의 입법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그러한 입법들에 대비하여 기업 체질 개선 및 강화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UN과 OECD를 중심으로 RBC 의무 이행 강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또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론에서 언급한 입법 방식, 적용 대상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

64) 현재 OECD 한국대표부에서 RB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희 참사관에 따르면, 1976년 OECD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에도 책임경영(Responsible Conduct)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의미 있게 취급되지 않다가 2011년 UN 기업인권 이행지침(UNGPI)이 발표된 후 OECD 내에 RBC 작업반(Working Group)이 만들어지면서 RBC 개념이 급부상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한다.

65) 현재 CSR의 직접적인 입법사례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동 법률은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CSR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2016. 10. 28.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2)」(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5호)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동 법률 및 고시의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RBC는 CSR보다 좀 더 광범위한 의무, 예컨대, 다국적기업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기업의 행위도 실사의무가 포함된다는 점과 국제적인 추세도 UN 및 OECD를 중심으로 RBC 이행 확산 추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RBC를 규율하는 입법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며 입법 필요성과 입법효과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BC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대기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시차를 두고 중소기업에게 적용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 박상희, “의류와 신발 부문의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회의(2017. 2. 8~9) 결과 논의된 주요 내용”, OECD 한국대표부, 2017.
- 성승제,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2013-03, 한국법제연구원, 2013.
- _____,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법적 쟁점 : 서론적 고찰”,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三宇社, 2013.
- 신창균, “CSR과 CSV”, 기업지배구조(CG) 리뷰 제66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 이상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9.
- 이상훈,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 사회적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CSR 법제화의 길을 묻다) 자료집, 공동주최(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외), 2010. 4.
- 황상규, “ISO 26000(사회책임)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기업지배구조(CG) 리뷰 제50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 KOTRA,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 -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Global Market Report, 2013-46, KOTRA, 2013.
- Andrew Crane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EU,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Rana Plaza building collapse and progress of the Bangladesh Sustainability Compact*, 2015.
- Mark Esposito, *Put You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 Together!*, Tate Publishing & Enterprises, 2009.
- Michael Hopkis, *CSR and Sustainability: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Greenleaf Publishing, 2016.
-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2011 Edition)*, OECD Publishing, 2011.
- _____, *Annual Report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5*,

OECD Publishing, 2016.

_____, *Draft Annual Report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6 (DAF/INV/RBC(2017)2)*, 2017.

OECD &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O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OECD Publishing, 2016.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ABSTRACT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its Implications on Policy

Keon-Hyung AHN · In-Ho JOE · Hee-Hwan KWON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expanded their investments to foreign countries, numerous controversies and disputes arose from their negative impact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the host countries. In respon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have considered various ways to prevent these negative impacts and search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methods. It is recognized that the OECD Guideline is one of the tools they created for this purpose. The OECD Guideline is contrastable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s which are regarded as a corporation's charity activities apart from their core business functions. Howeve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like the OECD Guideline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moving forward from CSR, due to its requirements that corporations carry out their duties in a responsible manner within the field of their core business, such as tax, global supply chain or consumer protection.

RBC which is binding in nature, has even been implemented through legis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Switzerland, and the UK. The discussion in Korea, however, has not reached that level. Discussions for legislation center singularly on CSR efforts, with a dialogue only recently forming around the topic of legislation concerning RBC.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ho lack certain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to adequately develop RBC initiatives may find this more obstacles to implementation through legislated RBC, than if it were presented in Korea through other means. It's necessary to admit that RBC is a critical issue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time is required to consider its application directly to SMEs.

Keywords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Supply Chain